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7월 17일, 임오경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7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024. 8. 28) 상정, 축조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025. 2. 27) 상정, 축조심사, 의결

(수정가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3. 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임오경의원)

현대인의 고질병인 스트레스 해소와 사회관계망 강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여가시간의 증가, 의료비 절감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에 이를 따라가지 못하여 체육관, 운동장 등의 학교 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주민들에게 개방해 달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학교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 시설의 생활체육시설 개방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는 학교시설이 파손되는 경우 유지·보수 비용을 학교가 부담해야 하고, 학교시설에서 생활체육을 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민법」 제758조의 시설물의 관리자의 책임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관리자인 학교의 장이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임.

이에 체육관, 운동장 등의 학교시설을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도록 협조하고, 이러한 생활체육 사용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체육시설로 이용되는 학교시설에 대한 경비 지원의 근거와 책임 규정을 신설하며, 생활체육을 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학교의 장이 「민법」 제758조의 시설물 관리자의 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면책하는 규정을 둬으로써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전완희)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주민이 일정한 학교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협조하도록 하고, 학교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등의 점유자·소유자에 대한 책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시설로 이용되는 학교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신설).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9조(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로 이용) ①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각 제2조의 학교(이하 “각급학교” 라 한다)의 장은 학교교육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 주민이 학교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생활체육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제1항의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구두·서면 등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생활체육 시설로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생활체육시설로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학교시설을 생활체육 시설로 이용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책임에 대하여는 「민법」 제758조제3항을 적용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 시설로 이용되는 제1항의 학교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나. 검토의견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1조¹⁾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4항²⁾에 따르면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이용되어야 하며, 학교장의 결정[국립학교의 경우]이나 지자체별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또는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사용료 지원 조례’ 등 개별 규정[공·사립학교의 경우]을 통해 체육시설의 개방이 이뤄지고 있음.

그러나 개방으로 파손된 학교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학교가 부담해야 하고, 생활체육 도중 발생한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

-
- 1)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 2)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 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이용되어야 한다.

제758조에 따라 시설물 관리자인 학교장이 부담하게 됨에 따라, 실제로는 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로의 개방이 잘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학교장의 학교시설 개방 협조 의무 및 사고 관련 면책 규정을 도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시설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별 학교의 부담이 완화되어 학교시설 개방의 활성화와 생활체육 환경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³⁾⁴⁾.

특히,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문체부), 스쿨매니저 사업(시·도 교육청) 등 국가·지자체에서 개방 학교에 인력 및 시설물 보수 비용 등의 지원을 이미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제도에 지원 규정(안 제9조제6항)이 뒷받침됨으로써 학교체육시설 개방 사업의 안정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임.

3) 참고로, 문체부는 안 제9조제1항과 관련하여, 다양한 체육수요를 고려하여 이용주체를 주민뿐만 아니라 체육단체 등으로 다양화하고, 시설 범위를 생활체육시설이 아닌 체육시설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4) 참고로, 대한체육회는 안 제9조제3항제1호와 관련하여, 일몰시간은 연중 편차가 3시간 정도 발생하므로 규칙적인 운동 장려를 위해 '일몰 후'를 '21시 이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표] 국가·지자체의 학교체육시설 지원 현황

사업	지원 내용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 (문체부)	○사업내용: 개방 학교체육시설에 관리매니저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 관리매니저 자격 및 역할																							
	<table><tr><td>자격</td><td>-학교개방, 시설관리, 참가자 통제,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도 등 -(우대사항) 종목 지도 자격증 소지, 해당분야 전공 및 경력자</td></tr><tr><td>역할</td><td>-학교개방업무 총괄, 지역 주민 모집, 시설 관리 및 홍보 등 -스포츠지도 업무, 지역 내 리그전 개최 등 프로그램 운영</td></tr></table>	자격	-학교개방, 시설관리, 참가자 통제,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도 등 -(우대사항) 종목 지도 자격증 소지, 해당분야 전공 및 경력자	역할	-학교개방업무 총괄, 지역 주민 모집, 시설 관리 및 홍보 등 -스포츠지도 업무, 지역 내 리그전 개최 등 프로그램 운영																			
	자격	-학교개방, 시설관리, 참가자 통제,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도 등 -(우대사항) 종목 지도 자격증 소지, 해당분야 전공 및 경력자																						
	역할	-학교개방업무 총괄, 지역 주민 모집, 시설 관리 및 홍보 등 -스포츠지도 업무, 지역 내 리그전 개최 등 프로그램 운영																						
	○ 지원현황 -2024년: 173개교 공모, 120개교 선정(전국 초·중·고 12,027개교)																							
<table><tr><td>연도</td><td>2018</td><td>2019</td><td>2020</td><td>2021</td><td>2022</td><td>2023</td><td>2024</td></tr><tr><td>예산 (백만원)</td><td>4,131</td><td>4,131</td><td>4,131</td><td>4,131</td><td>4,131</td><td>4,131</td><td>4,198</td></tr><tr><td>지원 개교</td><td>155</td><td>168</td><td>156</td><td>155</td><td>150</td><td>120</td><td>120</td></tr></table>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 (백만원)	4,131	4,131	4,131	4,131	4,131	4,131	4,198	지원 개교	155	168	156	155	150	120	120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 (백만원)	4,131	4,131	4,131	4,131	4,131	4,131	4,198																	
지원 개교	155	168	156	155	150	120	120																	
주1) 국민체육진흥기금 세부사업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5161-301)’ 중 내역사업 주2) 추진방식: 민간경상보조(대한체육회, 보조율 100%) 주3) 2024년 기준, 교당 350만원(사업비120+인건비230)*10개월*120개교																								
스쿨매니저 사업 (서울교육청)	○ 사업내용: 개방 학교체육시설에 스쿨매니저 파견, 시설 배상보험 가입 지원 및 특별 인센티브 지급																							
	○ 지원방식 - 서울교육청-자치구 업무협약 → 참여학교 선정 → 자치구-참여학교 업무협약 → 참여학교 지원																							
	<table><tr><td>스쿨 매니저</td><td>○자치구 소속 초단시간근로자 채용 후 학교로 파견 ○주말 총 14시간 이내 근무 -예약자 신원 확인, 외부인 출입통제, 이용자 활동 감독 -개방 시간 종료 후 시설물 점검 및 청소 등</td></tr><tr><td>영조물 배상보험 가입 지원</td><td>○보험상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배상공제 -시설 관리하자로 타인의 신체·재물 훼손에 대한 배상 책임 발생 시 보상 처리</td></tr><tr><td>인센티브 지급</td><td>○연간 100시간 이상 개방 시 등 ○서울교육청: 특별 인센티브 교당 2,000만원</td></tr></table>	스쿨 매니저	○자치구 소속 초단시간근로자 채용 후 학교로 파견 ○주말 총 14시간 이내 근무 -예약자 신원 확인, 외부인 출입통제, 이용자 활동 감독 -개방 시간 종료 후 시설물 점검 및 청소 등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 지원	○보험상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배상공제 -시설 관리하자로 타인의 신체·재물 훼손에 대한 배상 책임 발생 시 보상 처리	인센티브 지급	○연간 100시간 이상 개방 시 등 ○서울교육청: 특별 인센티브 교당 2,000만원																	
	스쿨 매니저	○자치구 소속 초단시간근로자 채용 후 학교로 파견 ○주말 총 14시간 이내 근무 -예약자 신원 확인, 외부인 출입통제, 이용자 활동 감독 -개방 시간 종료 후 시설물 점검 및 청소 등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 지원	○보험상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배상공제 -시설 관리하자로 타인의 신체·재물 훼손에 대한 배상 책임 발생 시 보상 처리																						
인센티브 지급	○연간 100시간 이상 개방 시 등 ○서울교육청: 특별 인센티브 교당 2,000만원																							
-비용: 서울교육청-자치구가 5:5 분담(인센티브는 기관별 별도) *12개월간 교당 1,412만원(인건비1,209+보험료203) 소요(인센티브 별도)																								
○ 지원현황 -2023년: 성북구 등 3개 구청 협약 및 9개교 시범 운영 중 -2024년: 성동구 등 7개 구청 협약 추진																								

주: 인천, 경기, 광주, 울산교육청 등의 경우에도 지자체와의 업무협약 추진 중
자료: 문체부, 교육부

다만, 안 제9조제5항의 손해배상 면책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선, 국·공립학교의 경우, 국가·지자체(교육청)는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영조물 관리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이 「민법」 제75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소유자로서 책임을 지는바,⁵⁾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면책만을 규정할 경우 학교간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민법」 제758조제3항의 ‘구상권’은 원인에 대한 책임 없는 자가 책임 있는 자를 갈음하여 채무를 다한 후 책임 있는 자에게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민법」 제758조제1항에 따른 점유자·소유자의 1차적 배상책임은 배제한 채 동조 제3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 조항만을

5) 배상책임 관련 근거법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상 논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생활체육진흥법」상 ‘사용자’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음에도 개정안에서 ‘사용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민법」상 ‘사용자’⁶⁾와 의미상 혼동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손해배상책임 면제(안 제9조제5항) 규정의 도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겠음.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체육활동에 기인한 사고 책임 소재는 국공립학교인지 사립학교인지에 따라 근거 법령이 달라지므로 관련 법률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⁷⁾

참고로, 교육부는 현행 법령(「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서 모든

6)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는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를 의미함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참고로, 대한체육회는 학교장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개정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23.11.23.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학교장의 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 바 있음)

국민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은 개방 대상 학교에 관리 인력 지원, 시설물 보수를 위한 재정 인센티브 지원, 학교시설 예약시스템 구축·운영 등 시·도교육청-지자체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 시설물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임오경)

수정가결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일부 체계·자구 수정이 있었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1.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3.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수정이유

개방 대상 학교시설이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 등 체육시설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학교체육시설을 동호회·체육단체 등도 이용하는 현황을 반영하여 이용주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학교체육시설 개방 시 발생하는 사고 관련 민사상 책임을 전적으로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관리주체 간 이용계약에 따라 책임을 이전하는 것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도 학교장 등의 민사상 책임을 면책하여 학교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수정주요내용

가. 개방 대상 학교시설을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체육시설’로 구체화하고, 이용주체를 ‘주민 등’으로 확대함(안 제9조제1항 신설 등)

나. 학교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을 위해 관리주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안 제9조제3항·제4항 신설)

다. 학교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이용계약 체결, 안전점검 등 필요조치 이행 시 학교체육시설 개방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민

사상 책임이 면책됨(안 제9조제5항 신설)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의 제목 중 “생활체육시설로”를 “생활체육시설 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각 제2조의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학교교육에 현저한”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에”로, “주민이”를 “주민 등이”로, “운동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생활체육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를 “운동장 등(이하 “학교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하도록 개방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학교행사”를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행사”로, “학교시설”을 “학교체육시설”로, “있다”를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1항의 학교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를 “학교체육시설을 생활체육 시설 등으로”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각급 학교의 장 등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그로 인한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시설로 이용되는 제1항의 학교시설의 설치 및”
을 “제1항에 의하여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그 시설의”로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체육시설의 생활체육시설 등으로의 개방과 그 이
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주민 등이 학교체육시설을 용이하
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의 원활한 개방과
이용을 위하여 관리주체와 학교체육시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의 자격, 보험의 가입, 안전점검 등 이용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제9조(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로 이용) ①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각 제2조의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학교교육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 주민이 학교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생활체육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제9조(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이용)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에 -----주민 등이-----운동장 등(이하 “학교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하도록 개방할 수 있다. ---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행사----- ----- ----- -----

아니할 수 있다.

② 각급학교의 장
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이를 이용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
거나 인터넷 홈페
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하고, 그 사
유가 소멸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학
교시설을 개방하여
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학
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제1항의
학교시설의 이용을

--학교체육시설--

--있으며 이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체육시설의 생활체
육시설 등으로의
개방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
· 감독하며 주민
등이 학교체육시설
을 용이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필요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각급 학교의 장
은 제1항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의 원
활한 개방과 이용
을 위하여 관리주
체와 학교체육시설
에 관한 이용계약
을 체결할 수 있다.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구두·서면 등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1. 일몰 후에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교육감은 학교 시설의 생활체육시설로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생활체육시설로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학교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책임에 대하여는 「민법」 제758조제3항을 적용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

④ 관리주체의 자격, 보험의 가입, 안전점검 등 이용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학교체육시설을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각급 학교의 장 등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그로 인한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서 삭제>

⑥ 제1항에 의하여

	<u>치단체는 생활체육</u> <u>시설로 이용되는</u> <u>제1항의 학교시설</u> <u>의 설치 및 유지·</u> <u>보수 등에 필요한</u> <u>인력 및 경비를 지</u> <u>원할 수 있다.</u>	<u>학교체육시설을 개</u> <u>방하는 경우에 국</u> <u>가 및 지방자치단</u> <u>체는 그 시설의---</u> <u>-----</u> <u>-----</u> <u>-----.</u>
--	--	---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이용)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등(이하 “학교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하도록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조(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이용)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등(이하 “학교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하도록 개방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u> <u>③ 제1항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